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일자 : 2005. 7.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2005.7.31부)됨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2. 주요골자

- 장학생의 선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절차에 의한다.</p> <p>1. (생략)</p> <p>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p>	<p>제6조(장학생의 선발)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 -----.</p>